

대한기생충학회 학술상 시상 규정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정 | 1979년 11월 23일 |
| 제1차 개정 | 1991년 3월 |
| 제2차 개정 | 1994년 4월 1일 |
| 제3차 개정 | 2002년 10월 25일 |
| 제4차 개정 | 2005년 11월 11일 |
| 제5차 개정 | 2007년 10월 26일 |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기생충학회 회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생충학 발전에 공헌이 큰 학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이 상의 명칭은 “대한기생충학회 학술상”이라 칭한다.

제3조 (수상자) 수상자는 매년 1명으로 한다. 다만 수상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.

제4조 (자격) 수상 대상자는 대한기생충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.

- ① 회칙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
- ② 기생충학잡지 또는 국외 학술지 (Index Medicus 또는 Science Citation Index에 게재되는 것에 한함)에 심사 기준일 3년 이내에 원저로 발표된 논문의 제1저자 또는 연락책임저자
- ③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다른 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

제5조 (수상 후보자의 추천)

수상 후보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술상위원회에서 평의원회에 추천한다.

제6조 (학술상위원회 구성)

학술상위원회는 5-10인 이내 위원으로 아래 각 항에 의거하여 구성한다.

- ① 위원장과 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- ② 총무부장과 학술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제7조 (학술상위원회 활동)

학술상위원회는 아래 각 항의 활동을 한다.

- ① 학술상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위원장에 추천한다.
-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피추천인 서류를 제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.
- ③ 위원장은 피추천 후보자에게 제8조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.
- ④ 위원장은 제출받은 후보자의 서류를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검토하게 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1인의 후보자를 결정하고, 결정한 후보자를 평의원회에 추천한다.

제8조 (추천 구비서류)

피추천인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통고받은 지 2주 이내에 학술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이력서 15부
- ② 연구업적 목록 15부
- ③ 연구 업적 논문 별책 또는 사본 15부

제9조 (수상자 결정) 수상자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확정한다.

제10조 (시상) 최종 결정된 수상자에게 매년 개최되는 정기 총회 석상에서 회장이 학술상으로 상패와 부상을 시상한다.

제11조 (부칙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.